

급여제공 범위 안내 및 확인

1. 본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며, 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,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인으로써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.

<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>
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

-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가급여

- 가.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나.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2. 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제외되오니, 이점 양해바랍니다.

<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>

제14조(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)

-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(명절음식, 제사음식, 생일 및 잔치음식, 김장하기 등)
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(밭일, 논일, 기타영업 등)
3.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(대형유리창문 닦기)

3. 외출 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는 중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.

다솜재가요양복지센터 귀하

기관은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수급자(보호자)에게 직접 설명하였으며,
수급자(보호자)는 이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급여제공범위안내자 심 월 숙 (인)

수급자(보호자) _____ (인)